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



보건복지부

개편 기본 방향_ 보육의 질 제고 및 교사 처우 개선



보육 과정 및 시간을 구분 7:30~19:30 운영 → 기본보육 + 연장보육
각 과정 별 별도 지원 체계 마련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연장 보육료 지원





- ◆ 어린이집 보육시간(과정)을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'**기본보육**'과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'**연장보육**'으로 구분
- ⇒ 연장보육이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**연장 보육료와 전담 교사 인건비를 지원**

영유아 : 전담교사 배치로 정서적 안정감

교사 : 업무 부담 및 근무 환경 개선

어린이집 : 장시간 보육 운영 부담 완화 부모 : 부담 없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 이용

< 개편안 기본 운영 모형안 >

| 7 | :30 9: | 00 16 | :00 1 | L7:00 | 19:30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|
| 과정 | 등원 지도 | 기본보육 | | 연장보유 | <u> </u> | | |
| 아동 |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 | | | 연장보육 신청 아동 * 0-2세는 자격필요 | | | |
| 반 구성 | 통합보육 | 연령별 반 구성 | | 연장반(연령 혼합) | | | |
| 교사 | 당번 교사 | 담임 교사 | 연 | 항보육 전대 | 할 교사 | | |
| 보육료 | | 보육료 | | 시간당 | 보육료 | | |

- 1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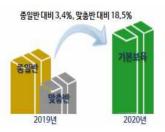
Ⅲ 기본보육 시간의 운영

- □ (보육 시간) 9:00~16:00
 - * 7:30~9:00는 순차적 등원이 이루어지는 등원지도 시간으로 **기본보육시간에 포함**
 - * 오전 9시~오후 4시 전후 30분간까지는 탄력적 조정 가능
- □ (대상 아동) 어린이집 이용을 신청한 모든 영유아
- 종일반 맞춤반 구분은 폐지하고 모든 아동에게 동일 보육시간 보장
- □ (보육교사) 기존 배치되어 있는 담임교사가 근무, 정기적 대면보육 시간은 7시간으로 권고
 - * 보육 7시간 + 준비시간 1시간 + 휴게시간 1시간
 - * 등·하원지도를 위한 당번 형식의 통합반 보육은 가능
- □ (보육료) 기본보육시간(7시간)에 등·하원 및 행정업무 등 반영하여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 포함하여 17시까지로 산정
 - * 하원 준비, 교사-부모 인계(상담), 차량하원 등의 실제 운영시간 반영



○ 보육료 지원 단가는 '19년 대비 평균 7.9%인상

| 2019년 | 종일반 | 맞춤반 |
|-------|-----|-----|
| 0세반 | 939 | 839 |
| 1세반 | 664 | 575 |
| 2세반 | 510 | 437 |



| 2020년 | 7 | 부모 | 시설 | |
|-------|-----|-----|-----|--|
| 0세반 | 970 | 470 | 500 | |
| 1세반 | 686 | 414 | 272 | |
| 2세반 | 527 | 343 | 184 | |

Ⅲ 연장보육 시간의 운영

- ① (보육 시간) 16:00~19:30
 - * 기본보육시간 탄력 편성 시 기본보육 종료 시간부터 19:30분까지

② 대상 아동

- (0~2세) 장시간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'**자격'**을 충족하는 부모의 영아 중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영아
 - (신청) 연장보육 이용에 대해 원장 상담 후 시군구에 신청
 - (자격관리) 시스템 연계 자료 위주로 자격 관리 간소화



- * 자격증빙 대상 감소(기존 종일반 70% \rightarrow 연장반 20 \sim 25%)로 행정력 절감 가능 예상
- (3~5세) 연장보육 이용을 사전에 신청한 유아
 - (신청) 별도 자격이 필요 없으므로, 원장 상담 후 어린이집에 신청
 - * 신청서식 및 방법 제공 예정



③ 연장반 편성

- (반편성 기준) 16시부터 별도로 연장보육을 위한 반 편성하여 보육, 탄력 보육 일부 허용
 - 교사 대 아동 비율 : 영아반 1:5, 유아반 1:15,
 - * 0세반 아동으로만 반 구성 시 및 장애아 포함 시 1:3
 - * 영아반 중 0세반 아동 포함 시. 1:3 가능(어린이집 당 1개 반에 한하여)
- 17시까지는 차량 시간, 하원 지도 등 상황에 따라 담임 또는 당번 교사 근무 가능하므로 17시 이후 보육 수요를 기준으로 편성 필요
- 아동이 17시 이후 월 10시간 이상 이용 시 연장반 신청을 권고
- * 연장반 시간당 보육료도 17시 이후 이용분부터 지급
- (**탄력 보육**) 영아반 2명, 유아반 5명 내 탄력 보육 허용



- * 연장반 미신청 아동 중 간헐적·긴급한 연장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
- * 탄력보육 아동이 탄력보육 정원 초과 시, 연장반 교사 외에 교사 추가 근무
- **※ [참고]** 연장반 정원이 100% 찬 상태에서 신규 아동이 연장보육 추가 신청 시?
 - (원칙) 연장반을 신규 편성하여 보육
 - (허용) 추가 신청 아동 수가 연장반의 탄력보육 정원 내인 경우, 기존 연장반에 포함하여 보육가능
 - * (시스템) 연장반 등록 또는 간헐적·긴급한 보육 수요 아동과 동일하게 처리, (실제) 연장반 정원으로 포함하여 정규 정원으로서 보육
- 연장보육 추가 신청 아동이 **탄력보육 정원을 초과**하는 경우에는, **연장반을 신규로 편성** (기존 형태 통합보육도 운영 가능)

- 4 연장보육 교사 배치 및 근무
- 연장반에는 연장보육 전담 교사 배치가 원칙
 - (전담교사의 범위) ① 신규채용 교사, ② 기본보육시간 보조교사 근무 후 연장반 전담, ③ 야간연장(시간연장) 교사로서 연장반 전담
 - * 야간연장(기존 시간연장)반 교사가 연장반 전담 시 기존 지원되는 근무시간 범위 내의 근무로 별도 인건비 지원 없음
- 단, 아래의 경우 기본보육 담임교사(교사 겸직 원장)의 연장반 겸직 가능

< 담임교사의 연장보육 겸임 예외 사유 >

- ① 연장반 아동 현원이 연장반 교사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
- ② 농어촌 지역인 경우
- ③ 다수의 연장반이 있으나, 신규채용, 보조교사 겸직, 시간연장 교사 활용을 해도 추가적인 전담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

< 전담교사 인정 범위 및 인건비 지원 대상 여부 >

| | | 연장반 전담 여부 | 지 | 인건비 원 대상 여부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신규 채용 전담 교사 | mþ | 0 | - | 0 |
| 기본보육 보조교사 | mb | 0 | - | 0 |
| 시간연장 교사 | 800) | 0 | - | × |
| 기본보육 담임교사 | 1000 | × | 100 | × |

(인건비 지원) 인건비 100.2만원 + 전담수당 12만원 + 4대보험및 퇴직적립금 사용자부담분 일부(30%)

< 연장반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요건 >

- ① 자동 전자 출결시스템에 의한 아동출결 관리
- ② 연장보육반 현원이 정원의 50% 이상
 - * 영아반 3명, 유아반 8명, 0세반(장애아 포함시) 2명
- ③ 연장반 월 이용시간이 영아반 30시간, 유아반 80시간 이상
 - * (영아반) 정원 50% 3명 * 인당 1일 이용시간 0.5시간 * 월 이용일수 20일 = 30시간 (유아반) 정원 50% 8명 * 인당 1일 이용시간 0.5시간 * 월 이용일수 20일 = 80시간

- (인건비 지원 정원 기준 판단 시점) <u>전월</u> 정원 기준 **충족 일수가** 1일 이상이고, 전체 이용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인건비 지급
- 연장보육반 아동 감소 등으로 인건비 지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최대 2개월까지는 전담 교사 인건비 지원
-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연가 등에 따른 보육공백 시 대체교사 지원
- * '20년 대체교사 인력 700명을 추가 확보(총 3,436명)하여 교사들의 연가, 보수교육 등에 따른 보육공백 시 어린이집에 인력 지원할 계획
- 더불어, 육아종의 대체교사 지원이 곤란한 경우 어린이집 자체 채용 대체 교사도 활용 가능('19.9월~')
- (수당) 연장반 전담 교사에게 연장반 전담 수당 12만원 지원
 - 담임교사가 연장반 겸임 근무 시, 전담 수당(12만원) 미지급, 연장 보육료 수입을 통해 교사에게 **처우개선 수당 지원**
- (연장반 전담 교사 근무시간) 하루 4시간 기준 근무
- (예시) 3시 출근, 3시~4시 보육 준비 및 휴식, 4시~7시30분 연장반 보육



- *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, 원의 추가부담을 통해 근무시간 4시간 초과 가능 (하루에 전담 보육 8시간 넘지 않는 범위 내)
- (근무 내용) 연장반 아동에 대한 보육을 계획하고 보육시간 내 책임지고 보육하며, 부모에게 하원지도 및 인계
- (전담교사 임면보고) 전담교사가 배치될 경우 보육시스템에 전담 교사 성명, 전담교사 월 단위 근무 시간 등 등록
 - 전담교사 배치 시 변동 사항이 없는 한 최초 1회만 등록, 등록 후 인건비 지원 개시(등록 후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인건비 소급 지원)
- 연장보육반 운영 및 전담교사 배치 현황 **'아이사랑포털'에 공개**

5 연장 보육료

○ 지원 단가

(단위: 워 시간당)

| 구 분 | 영아반(1:5) | 유아반(1:15) | 0세반 및 장애아(1:3)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지원 단가 | 2,000 | 1,000 | 3,000 |

※ 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

○ (단가 산정 근거)

- (포함 내역) 인건비 제외, 연장보육으로 소요되는 관리운영비, 교재 교구비 중 소모품 등을 반영한 시간당 보육료를 산정하여 지원
- ※ [참고] 2019년 표준보육비용 4시간 보육비용은 영아반(1:5) 기준 월 57,000원
- 총 연장반 지원 시간(50시간)의 50%인 25시간(일 1.25시간=일 3,000원) 이용 시, 월 6만원으로 표준보육비용 초과 지원 가능
- **(산정방식)** 17시 이후 이용시간을 일 · 30분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
- 기본보육시간이 탄력 적용되어 기본보육 종료 시간이 16시가 아닌 경우에도 **연장보육료는 17시 이후부터 적용**

| 하원시간 | 보육료 | 하원시간 | 보육료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|
| 17:00~17:29 | 1,000원 | 18:30 ~ 18:59 | 4,000원 | | |
| 17:30~17:59 | 2,000원 | 19:00 ~ 19:30 | 5,000원 | | |
| 18:00~18:29 | 3,000원 | * 영아반 시 | 간당 2,000원 기준 | | |

- (미신청 아동의 연장 보육료) 연장보육반 미신청 아동이 17시 이후 탄력편성 정원으로 이용 시 보육료 연령에 따라 동일 적용
 - * 연장보육 미신청 아동 중 긴급한 연장보육 수요가 발생한 경우 17시 이후 탄력편성 정원으로 이용 시 연장보육료 지원
- **(산정기준)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시간**을 기준으로 산정
-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오류 또는 아동이 태그(비콘) 미소지 등의 경우, 기존 전자출결 시스템 수기입력 자료 인정
- * 수기 등록 시, 수기 등록 사유 함께 입력 필요

- (지원대상 및 방식) 일정 조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에 지원 < 연장보육료 지원 요건(아래 사항 모두 충족) >
 - (1) 자동출결 시스템에 의한 아동 출결 관리
 - (2)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

○ (지원절차)

| 전월말일 | ⇒ | 1일(0시) | \Rightarrow | 1~3일 | \Rightarrow | 1~10일 | \Rightarrow | 12~15일경 |
|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어린이집 | |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| | 어린이집 | | 시·군·구 | | 사회보장 정보원 |
| 이용현황 확정 | | 지원금 생성 | | 생성내역 확인 및 지급신청 | | 신청내역 확인 및 자급승인 | | 어린이집 입금 |

6 연장반 운영

- (보육과정) 연령 통합반 보육 프로그램 제시 및 운영
 - * 급간식 제공을 원하는 경우 자부담을 통해 제공 가능
- (공간 활용) 원의 상황에 맞춰 연장보육 공간을 마련
 - 원활한 교재교구 활용을 위하여 영아반의 경우, 영아반 공간 활용, 유아반의 경우 유아반 공간을 활용
 - 영아 연장반의 경우, 안정감 제공을 위하여 연장반 전담 공간을 마련
 - * 매일 동일한 공간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
 - 연장반 교실에는 반 이름, 담임교사, 아동을 별도 표기하여 안정감 제공
 - 기본보육 아동의 하원 지도 등으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 동일 공간 보육 가능
 - 공동 놀이실 등으로 분리가 필요하다면 연장보육 아동이 아닌 기본보육 아동을 놀이실로 이동하여 하원 지도
- (급·간식) 연장보육 비용에 급간식 비용은 미포함되어 있으며, 연장 보육시간에 급간식 제공 의무는 없음
 - * 학부모와의 상의를 통해 급·간식 제공 시 필요경비 수납 가능

- (특별활동) 연장보육반 전용 특별활동 신설은 불가
 - 연장보육시간은 연장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된 만큼 특별활동 보다는 연장보육 교사와 안정적인 보육을 권고
- **(보육계획 수립)** 표준보육과정을 참고하여 주별 연장보육반 보육 계획 수립 및 보육 진행
- 연장보육 아동의 출결·이용시간 확인, 관찰일지 작성
 - 기본보육 시간의 아동 특이사항 등 인계를 받아, 필요 시 연장보육 시간의 관찰일지 작성 → 부모에게 하원 지도 시 부모에게 알림
- (하원지도) 기본보육 이후 연장보육 신청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원을 하원 한 이후 재 등원*(병원 방문 제외)하는 것은 불가
 - * 연장보육 시간 내 학원을 다녀오는 경우 등
- 하원 책임자(아동의 보호자)가 반드시 실내(신발장)로 들어와야 인계 가능

⑦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·운영

- 아동의 등하원 정보를 **자동으로 체크**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**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함**
 - (아동) 자동 출결을 위한 TAG 소지("20년 비용 지원)하고 등하원, (어린이집) 등하원 시각 기록을 위한 기기 설치(비용 지원)

< 자동 전자출결 시스템의 등하원시각 확인 방법 >



- * 연장보육반 미 개설 시에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출석부를 통해 출결관리
- 미설치 시 연장보육료는 시스템으로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지급 할 수 없으며, 연장보육반 교사 인건비 지원에서 제외

- 다만, 신학기에 신입원아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등록이 안 된 기간 등에는 시스템에서 수동으로 출결관리
-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오류 등의 경우, 전자출결시스템 수기입력 자료 인정(수기 입력 시, 수기 입력 사유 함께 입력 필요)

○ 목적 및 효과

- (시스템 구축 및 기능연계를 통한 업무경감) 민간 등·하원 알림 서비스와 보육통합정보시 스템과 연계하는 기능으로 개발



- 보육료 생성 등 기존의 행정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 편의성 제고, 수동, 자동 모두 보육포탈시스템으로 관리, 종이 출석부 폐지
- (부모 대상 안심 문자 서비스 제공) 아동의 등하원 시각을 부모 에게 전달하여 안심할 수 있도록 함

<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의 기능 및 기대 효과 >

